

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도시경관과 관련있는 총무국 소관 광고물 관리업무를 도시국으로 이관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총무국 분장 사무 중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5조제2항제14호)
- 도시국 분장 사무에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7조제2항제17호)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 기준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

도시경관과 관련 있는 광고물 관리업무를 도시디자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조정하려는 것으로

□ 적법성 부분은

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②항에 보면 「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」 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,

또한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④항에 「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」 라고 명시하고 있음.

□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

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으며 또한 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짐.

붙임 : 관계법령

2008. 10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허 용 택

《 관 계 법 령 》

지방자치법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은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항 (생략)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 설치기준) ①(생략)

②~③(생략)

④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